

#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4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  
발 의 자: 이성배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동욱,  
남궁역, 송경택, 이상욱,  
이원형, 이종환, 최민규  
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근래 차량이 보도에 돌진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. 특히 최근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16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이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. 이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 신설(안 제17조의3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보행안전시설의 설치)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7조의3(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)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의3(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)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[참고] 2024년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17조의3	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·보강	197,800
	- 중구 장충단로 방호울타리 설치 : 200,000원×50m	10,000
	- 성동구 행당로 방호울타리 설치 : 200,000원×464m	92,800
	- 성북구 동소문로 등 2개소 방호울타리 설치 : 200,000원×50m	10,000
	- 노원구 노원로 등 2개소 방호울타리 설치 : 200,000원×225m	45,000
	- 서초구 사평대로 방호울타리 설치 : 200,000원×200m	40,000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의3(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)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(방호울타리 설치 등)할 수 있으나 설치시설물의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 재정분석담당관  
담    당    관    오희선  
추계세제팀장    김중헌  
추계분석관    김지혜  
☎ 02-2180-7953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